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UBS 유럽오퍼튜니티증권자투자신탁[주식-재간접형]

2. 주요 변경내용

-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
- 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
3. 변경효력발생(예정)일 : 2017년 06월 29일

4. 대비표

[간이투자설명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	**보수** (생략)	**보수** (업데이트)
II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	**3. 운용전문인력** (생략) **4. 투자실적 추이(연도별 수익률)** (생략)	**3. 운용전문인력** (업데이트) **4. 투자실적 추이(연도별 수익률)** (업데이트)

[투자설명서(일괄신고서)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(추가)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2017년 06월 29일 -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- 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5.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가. 책임운용전문인력 (생략)	**5.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가. 책임운용전문인력 (업데이트)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** (생략)	**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** (업데이트)
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	(생략)	(업데이트)

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	
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**1.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** 라. 운용자산규모 (생략)	**1.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** 라. 운용자산규모 (업데이트)
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	**3.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** 나. 수시공시 (2) 수시공시 (추가)	**3.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** 나. 수시공시 (2) 수시공시 10)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(부동산·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)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- 법 시행령 제 242 조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-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. 다만,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 - 지상권·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·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·변경 -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 (순차적 연번 변경)

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UBS코어셀렉션증권자투자신탁[주식혼합-재간접형]

2. 주요 변경내용
   - 종류 A-E, C-E 신설
   - 법시행령 개정 반영

3. 변경효력발생(예정)일 : 2017년 06월 29일

4. 대비표

[집합투자규약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	<추가>	종류A-E B4286 종류C-E B4281
제3조 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등)	제3항 <추가>	제3항 2. 종류 A-E 수익증권 : 판매회사의 온라인 가입 전용이며,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4. 종류 C-E 수익증권 : 판매회사의 온라인 가입 전용 수익증권
제10조 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	제2항 <추가>	제2항 2. 종류 A-E 수익증권 4. 종류 C- E 수익증권

제39조 (보수)	제3항 <추가>	제3항 [종류A-E 수익증권] 1.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3.00 2.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1.00 3.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50 4.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20 [종류 C-E 수익증권] 1.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3.00 2.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3.50 3.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50 4.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20
제40조 (판매수수료)	제2항 <추가>	제2항 2. 종류 A-E 수익증권 : 납입금액의 0.3%이내

[간이투자설명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I.집합투자기구의 개요	**보수** **※ 주석사항** 종류 C-F, W, C-P, C-P2의 보수에 대한 세부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	**보수** **※ 주석사항** 종류 A-E, C-E, C-F, W, C-P, C-P2의 보수에 대한 세부사항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II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	**3. 운용전문인력** (생략)	**3. 운용전문인력** (업데이트)

[투자설명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	**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** <종류 A-E, C-E 신설>	**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** 종류A-E B4286 종류C-E B4281

<table>
<tr><td>관한 사항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tr><td>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td><td>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
<종류 A-E, C-E 신설></td><td>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
종류A-E B4286
종류C-E B4281</td></tr>
<tr><td>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td><td>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
<추가></td><td>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
2017 년 06 월 29 일
- 종류 A-E, C-E 수익증권 신설
- 법시행령 개정 반영</td></tr>
<tr><td>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td><td>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
가. 책임운용전문인력
(생략)</td><td>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
가. 책임운용전문인력
(업데이트)</td></tr>
<tr><td>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td><td>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
가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
<종류 A-E, C-E 신설>

나. 종류형 구조
<종류 A-E, C-E 신설></td><td>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
가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<table><tr><th>구분</th><th>가입자격</th></tr><tr><td>A-E</td><td>판매회사의 온라인 가입 전용이며,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</td></tr><tr><td>C-E</td><td>판매회사의 온라인 가입 전용 수익증권</td></tr></table>
나. 종류형 구조
종류 A-E 온라인전용
종류 C-E 온라인전용</td></tr>
<tr><td>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td><td>11. 매입,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
(2) 종류별 가입자격
<종류 A-E, C-E 신설></td><td>11. 매입,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
(2) 종류별 가입자격<table><tr><th>구분</th><th>가입자격</th></tr><tr><td>종류 A-E</td><td>판매회사의 온라인 가입 전용이며,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</td></tr><tr><td>종류 C-E</td><td>판매회사의 온라인 가입 전용 수익증권</td></tr></table></td></tr>
</table>

<table>
<tr>
<td>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td>
<td>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
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
<종류 A-E, C-E 신설>

주) 판매수수료는 판매회사가 납입금액의 0.60%이내에서 수수료율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, 판매회사별 수수료율은 집합투자업자, 판매회사 및 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될 예정입니다.</td>
<td>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
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

<table>
<tr><th rowspan="2">구 분</th><th colspan="2">지급비율</th></tr>
<tr><th>종류 A-E</th><th>종류 C-E</th></tr>
<tr><td>선취판매 수수료</td><td>납입금액의 0.30%이내㈜</td><td>없음</td></tr>
<tr><td>후취판매수 수료</td><td colspan="2">해당사항 없음</td></tr>
<tr><td>환매수수료</td><td colspan="2">환매수수료 없음</td></tr>
</table>

주) 판매수수료는 상기 수수료율 이내에서 판매회사가 달리 정할 수 있으며, 판매회사별 수수료율은 집합투자업자, 판매회사 및 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될 예정입니다.</td>
</tr>
<tr>
<td>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td>
<td>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
<종류 A-E, C-E 신설></td>
<td>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
[종류A-E]
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0.30%
판매회사보수율 : 0.10%
신탁업자보수율 : 0.05%
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0.02%
보수합계 : 0.47%
합성총보수및비용 : 0.82%

[종류 C-E]
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0.30%
판매회사보수율 : 0.35%
신탁업자보수율 : 0.05%
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0.02%
보수합계 : 0.72%
합성총보수및비용 : 1.07%</td>
</tr>
</table>

<table>
<tr><td></td><td>다. 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 연간기준 예시표
<종류 A-E, C-E 신설></td><td>다. 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 연간기준 예시표
<table><tr><th>구분</th><th>1년후</th><th>3년후</th><th>5년후</th><th>10년후</th></tr><tr><td>종류 A-E</td><td>114</td><td>294</td><td>493</td><td>1,084</td></tr><tr><td>종류 C-E</td><td>110</td><td>346</td><td>606</td><td>1,379</td></tr></table></td></tr>
<tr><td>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</td><td>1.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
라. 운용자산규모
(생략)</td><td>1.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
라. 운용자산규모
(업데이트)</td></tr>
<tr><td>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</td><td>3.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
나. 수시공시
(2) 수시공시
(추가)</td><td>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
나. 수시공시
(2) 수시공시
10)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(부동산·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)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
- 법 시행령 제 242 조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
-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. 다만,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- 지상권·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·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·변경
-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</td></tr>
</table>

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UBS 블루칩바스켓 증권투자신탁(V-1호)[주식]

2. 주요 변경내용
   - 종류 A2 신설
   - 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
3. 변경효력발생(예정)일 : 2017년 06월 29일

4. 대비표

[집합투자규약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	<추가>	종류A2 BS444
제3조 (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등)	제3항 <추가>	제3항 2. 종류 A2 수익증권 :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(순차적 연번 변경)
제10조 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	제2항 <추가>	제2항 2. 종류 A2 수익증권 (순차적 연번 변경)
제20조 (한도및 제한의예외)	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8조제5호 내지 제9호, 제19조제2호 내지 제6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	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8조제5호 내지 제9호, 제19조제2호 내지 제6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

제39조 (보수)	제3항 <추가>	제3항 [종류A2 수익증권] 1.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4.446 2.판매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6.0 3.신탁업자보수율 : 연 1000분의 0.4 4.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000분의 0.18
제40조 (판매수수료)	제2항 <추가> ③제2항제1호 내지 제2호의 선취판매수수료율은 (이하생략)	제2항 3. 종류 A2 수익증권 : 납입급액의 1.0%이내 ③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선취판매수수료율은 (현행과동일)

[간이투자설명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I.집합투자기구의 개요	**보수** **※ 주석사항** 종류 C2~C5, C-F, S, W, C-P, C-P2 수익증권의 보수 상세내역은 정식 투자설명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	**보수** **※ 주석사항** 종류 A2, C2~C5, C-F, S, W, C-P, C-P2 수익증권의 보수 상세내역은 정식 투자설명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II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	**3. 운용전문인력** (생략)	**3. 운용전문인력** (업데이트)

[투자설명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	**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** <종류 A2 신설>	**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** 종류A2 BS444
제2부 집합투자기	**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** <종류 A2 신설>	**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** 종류A2 BS444

<table>
<tr><td>구에 관
한 사항</td><td></td><td></td></tr>
<tr><td>제2부 집
합투자기
구에 관
한 사항</td><td>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
<추가></td><td>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
2017 년 06 월 29 일
- 종류형 A2 신설
- 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</td></tr>
<tr><td>제2부 집
합투자기
구에 관
한 사항</td><td>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
가. 책임운용전문인력
(생략)</td><td>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
가. 책임운용전문인력
(업데이트)</td></tr>
<tr><td>제2부 집
합투자기
구에 관
한 사항</td><td>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
나. 종류형 구조
<종류 A2 신설></td><td>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
나. 종류형 구조
<table><tr><th>구분</th><th>가입자격</th></tr><tr><td>종류 A2</td><td>가입제한이 없으며,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</td></tr></table></td></tr>
<tr><td>제2부 집
합투자기
구에 관
한 사항</td><td>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
나. 투자제한
(생략) 파생상품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 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.</td><td>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
나. 투자제한
(생략) 파생상품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 개월까지 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.</td></tr>
<tr><td>제2부 집
합투자기
구에 관
한 사항</td><td>11. 매입,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
가. 매입
(2) 종류별 가입자격
<종류 A2 신설></td><td>11. 매입, 환매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
가. 매입
(2) 종류별 가입자격
<table><tr><th>구분</th><th>가입자격</th></tr><tr><td>종류 A2</td><td>가입제한이 없으며,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</td></tr></table></td></tr>
</table>

<table>
<tr>
<td>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td>
<td>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
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
<종류 A2 신설>

(주석 추가)</td>
<td>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
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

<table><tr><th rowspan="2">구 분</th><th>지급비율</th></tr><tr><th>종류 A2</th></tr><tr><td>선취판매 수수료</td><td>납입금액의 1.0%이내</td></tr><tr><td>후취판매 수수료</td><td>해당사항 없음</td></tr><tr><td>환매수수료</td><td>환매수수료 없음</td></tr></table>
주) 판매수수료는 상기 수수료율 이내에서 판매회사가 달리 정할 수 있으며, 판매회사별 수수료율은 집합투자업자, 판매회사 및 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될 예정입니다.</td>
</tr>
<tr>
<td>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</td>
<td>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
<종류 A2 신설>

다. 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 연간기준 예시표
<종류 A2 신설, 종류 C1 수정 및 종류 C2~C5 삭제>
<table><tr><th>구 분</th><th>1년후</th><th>3년후</th><th>5년후</th><th>10년후</th></tr><tr><td>종류 C1</td><td>201</td><td>633</td><td>1,109</td><td>2,524</td></tr><tr><td>종류 C2</td><td>188</td><td>592</td><td>1,038</td><td>2,364</td></tr></table></td>
<td>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
[종류 A2]
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0.4446%
판매회사보수율 : 0.6000%
신탁업자보수율 : 0.0400%
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0.0180%
보수합계 : 1.1026%

다. 판매수수료 및 보수·비용 연간기준 예시표
<table><tr><th>구분</th><th>1년후</th><th>3년후</th><th>5년후</th><th>10년후</th></tr><tr><td>종류 A2</td><td>212</td><td>453</td><td>718</td><td>1,507</td></tr><tr><td>종류 C1</td><td>206</td><td>606</td><td>987</td><td>2,076</td></tr></table></td>
</tr>
</table>

<table>
<tr><td></td><td>
<table>
<tr><td>종류 C3</td><td>175</td><td>553</td><td>969</td><td>2,207</td></tr>
<tr><td>종류 C4</td><td>163</td><td>514</td><td>900</td><td>2,049</td></tr>
<tr><td>종류 C5</td><td>151</td><td>475</td><td>832</td><td>1,895</td></tr>
</table>
</td><td></td></tr>
<tr><td>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</td><td>1.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
라. 운용자산규모
(생략)</td><td>1.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
라. 운용자산규모
(업데이트)</td></tr>
<tr><td>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</td><td>3.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
나. 수시공시
(2) 수시공시
(추가)</td><td>3.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
나. 수시공시
(2) 수시공시
10)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(부동산·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)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
- 법 시행령 제 242 조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
-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. 다만,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- 지상권·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·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·변경
-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</td></tr>
</table>

변 경 대 비 표

1. 펀드명 : 하나UBS 아시안리츠 부동산 투자신탁[재간접형]

2. 주요 변경내용

-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
- 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
3. 변경효력발생(예정)일 : 2017년 06월 29일

4. 대비표

[집합투자규약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제20조 (한도및 제한의예외)	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8조제6호, 제1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	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제18조제6호, 제1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

[간이투자설명서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	**보수** (생략)	**보수** (업데이트)
II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	**3. 운용전문인력** (생략) **4. 투자실적 추이(연도별 수익률)** (생략)	**3. 운용전문인력** (업데이트) **4. 투자실적 추이(연도별 수익률)** (업데이트)

[투자설명서(일괄신고서)]

구 분	변 경 전	변 경 후

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(추가)	**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** 2017년 06월 29일 -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정기갱신 - 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5.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가. 책임운용전문인력 (생략)	**5.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** 가. 책임운용전문인력 (업데이트)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** 나. 투자제한 **한도초과** (생략) 파생상품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 개월까지 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.	**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** 나. 투자제한 **한도초과** (생략) 파생상품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 개월까지 (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)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.
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**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** (생략)	**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** (업데이트)
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	(생략)	(업데이트)
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	**1.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** 라. 운용자산규모 (생략)	**1.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** 라. 운용자산규모 (업데이트)
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	**3.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** 나. 수시공시 (2) 수시공시 (추가)	**3.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** 나. 수시공시 (2) 수시공시 10)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(부동산·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)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

		하는 사항 - 법 시행령 제 242 조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-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. 다만,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 - 지상권·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·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·변경 -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 (순차적 연번 변경)